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myhome.lh.or.kr)으로 신청하세요!



남양주 호평

from LH 우리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남양주호평 국민임대아파트



- ▶ 의정부시 호원동 433-1번지
- ▶ 지하철 1호선 회룡역 하차 도보3분(1번 출구로 나가서 서울방면 200m)

임대문의

본사콜센터 | 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myhome.lh.or.kr



LH 속에는 인간중심(Life & Human), 국민행복(Love & Happy)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린 원형모티브가 서로 마주보며 크게 커가는 모양으로 녹색성장, 소통과 상생, 무한발전의 뜻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자연의 풍성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삶의 혜택!

푸른 미래가 펼쳐질 남양주 호평에서 만나는 특별한 생활-

풍부한 자연녹지와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편리한 교통망과 교육, 감성이 살아숨쉬는

남양주 호평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CONTENTS

Location 위치도	04
Housing 단지설계	06
Unit Plan 36형 평면	08
Unit Plan 46형 평면	10
Unit Plan 51형 평면	12
Complex Map 동호배치	14
Finishing Materials 마감재 리스트	15
Notice 입주자 모집공고	16

■ 본 카탈로그의 조감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미지·일러스트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합성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 항목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인간, 도시의 하모니!

하늘이 선사한 청정환경과 안정된 미래가치로 풍요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편리한 교통, 생활여건이 우수한 미래형 주거단지~
생활과 자연, 문화가 하나되는 곳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특권까지 모두 누리세요.



남양주 호평



■ 상기 교통망도 및 사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

생활과 자연, 문화가 하나되는곳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의특권까지 모두 누리세요.

- **편안하고 편리한 교통** >> 단지과 직선거리 1km내에 있는 경춘선 평내호평역에서 서울 상봉역까지는 5개역, 급행열차 이용 시에는 불과 2개역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 진입이 20분 대에 가능하며, 단지 정문에서 1분내 진입 가능한 46번 국도 호평IC와 호평택지지구에 연결한 동호평IC를 타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송파, 강남권 진입이 용이합니다.
- **우수한 교육환경** >> 단지 동측에 판곡 중·고교가 접해 있으며, 호평택지지구내 판곡초등학교와 그외 구룡초, 평동초, 호평중·고교 등 우수한 교육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 **아름다운 청정한 자연환경** >> 일본잎갈나무·잣나무 등 칠백여종의 식물이 자라는 천마산 군립공원의 울창한 숲이 북측으로 위치하여 청정한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 **삶의 여유 가득한 생활환경** >> E-마트, 금융, 관공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호평지구와 접해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석-호평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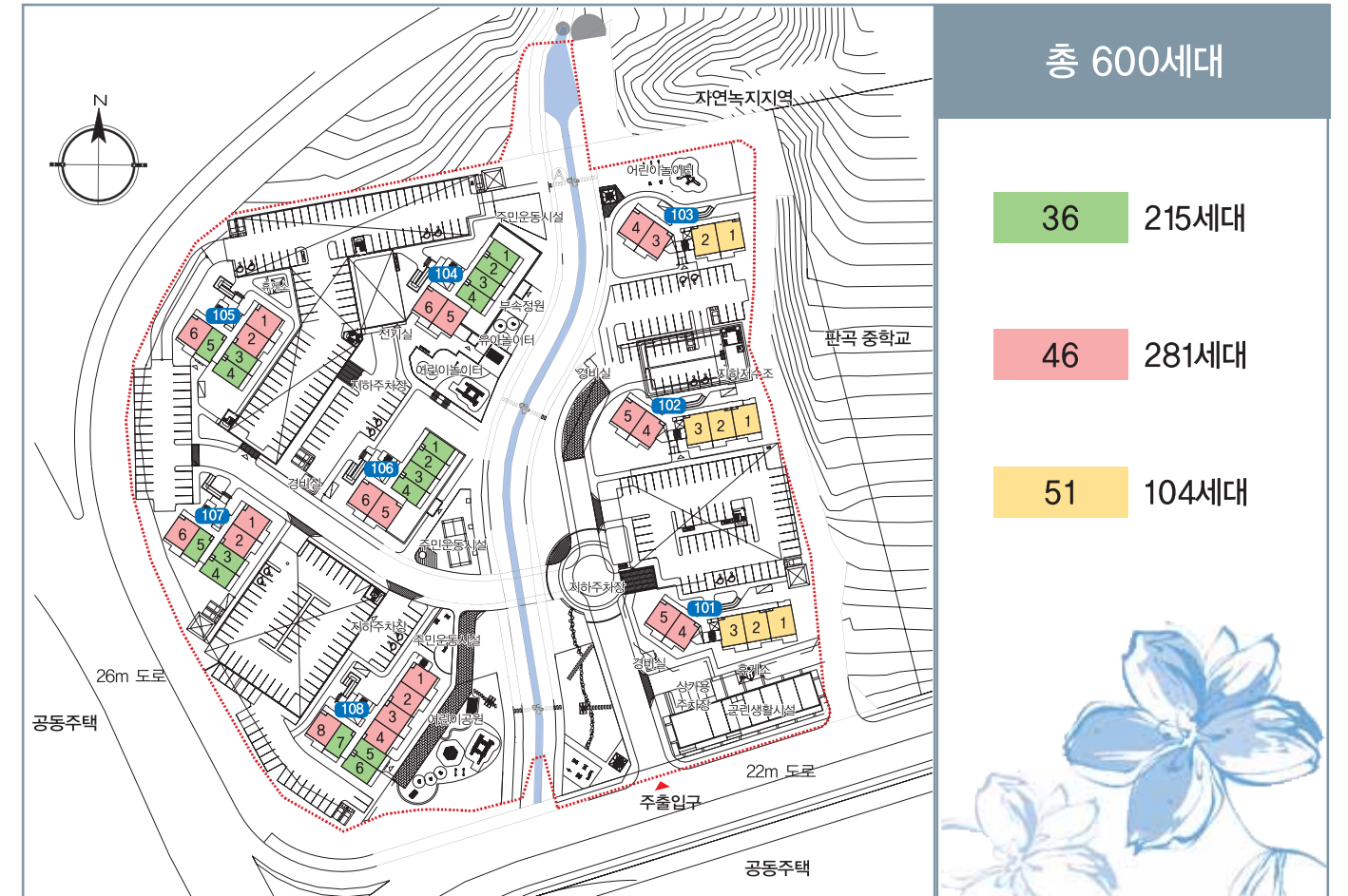
천마산국립공원



호평이마트

실개천과 숲이 가까운 자연친화적인 단지!

주변아파트와 독립된 공간적 특성을 살려
나만의 차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실속형 타운하우스를 지향합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도의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여건

- 본 단지는 북측 고도가 높고, 남측 고도가 낮은 구릉지 지형 특성을 띄고 있어 겨울철 차량 진출입 시 단지 고저차 및 빙설에 의한 차량운행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서측과 동측의 지구경계는 약 4~5m(추정)의 옹벽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 단지 북측방향으로 46번국도와 단지 동측과 판곡중학교 사이에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입지하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과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동측 경계선을 따라 인접한 판곡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과 판곡중학교사이 도로와 단지내 소하천(시설포함),어린이공원은 준공 후 지자체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단지!

자연을 닮은, 자연을 담은, 친환경 주거생활이 시작됩니다.

쾌적한 단지설계

채광, 통풍,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편안한 동선설계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더욱 높입니다.

자연을 닮은 조경설계

푸르른 자연을 닮은 조경설계로 단지 곳곳에서 건강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높입니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유아·어린이놀이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풍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휴게소와 주민공동시설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해 편안한 휴식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진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Unit Plan

36m²

전용 36.75m² 215세대

전 용 면 적	36.75m ²
주거공용면적	17.0572m ²
기타공용면적	1.9187m ²
지하주차장면적	6.8708m ²
계 약 면 적	62.5967m ²

■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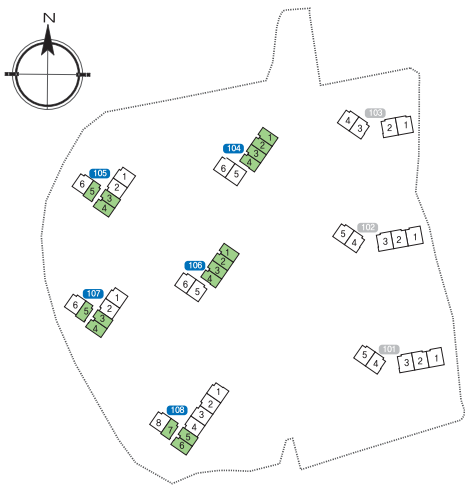
침 실 1	5.60m ²
거 실	14.26m ²
주 방 / 식 당	11.05m ²
반 침	0.91m ²
욕 실	2.96m ²
현 관	1.97m ²

■ 서비스면적

발 코 니 1	6.96m ²
---------	--------------------

해당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효율적이고 편리한 동선의 공간 설계
살수록 쓰임새 있는 합리적인 공간입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²×0.3025=평)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제외)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지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수치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²×0.3025=평)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제외)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 · n · i · t · P · l · a · n

46m²

전용 46.90m² 281세대

전 용 면 적	46.90m ²
주거공용면적	21.7683m ²
기타공용면적	2.4488m ²
지하주차장면적	8.7684m ²
계 약 면 적	79.8855m ²

■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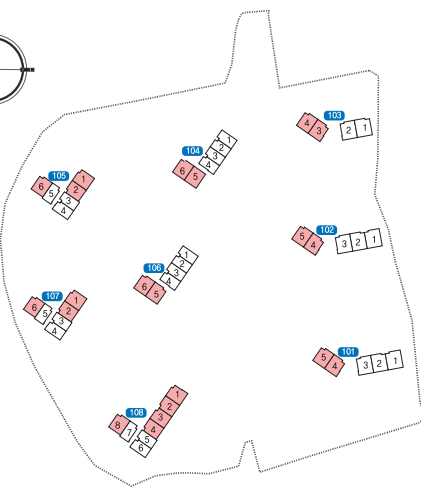
침 실 1	8.32m ²
침 실 2	9.18m ²
거 실	8.06m ²
주 방 / 식 당	15.09m ²
반 침	1.20m ²
욕 실	3.01m ²
현 관	2.04m ²

■ 서비스면적

발 코 니 1	9.51m ²
---------	--------------------

해당동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생활의 편리함을 더 해주는 행복설계
가족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공간입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²×0.3025=평)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제외)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수치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발코니 확장 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²×0.3025=평)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제외)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 · n · i · t · P · l · a · n

51m²

전용 51.60m² 104세대

전 용 면 적	51.60m ²
주거공용면적	23.9497m ²
기타공용면적	2.6941m ²
지하주차장면적	9.6472m ²
계 약 면 적	87.8910m ²

■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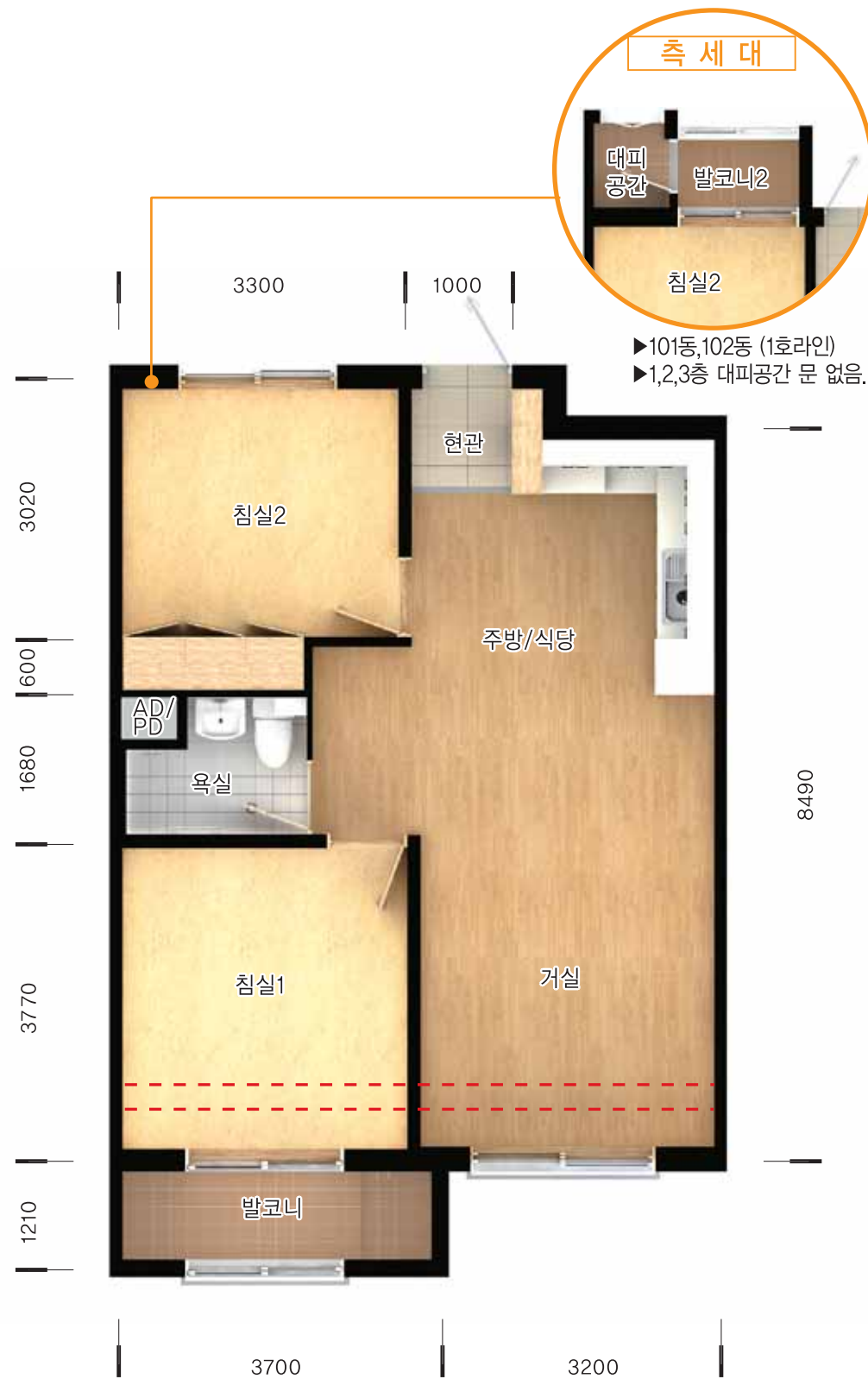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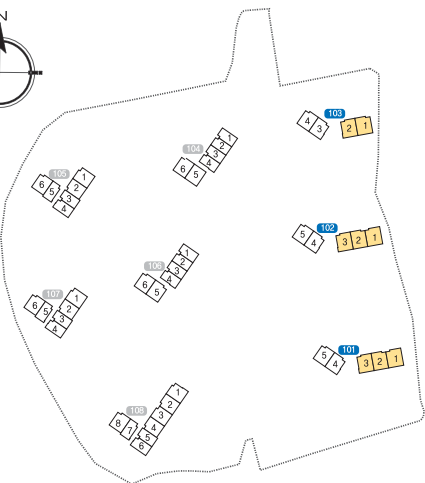
침 실 1	9.24m ²
침 실 2	9.18m ²
거 실	9.52m ²
주 방 / 식 당	17.62m ²
반 침	1.20m ²
욕 실	3.01m ²
현 관	1.83m ²

■ 서비스면적

발 코 니 1	10.20m ²
발 코 니 2(측세대)	4.79m ²

해당동

101동 102동 10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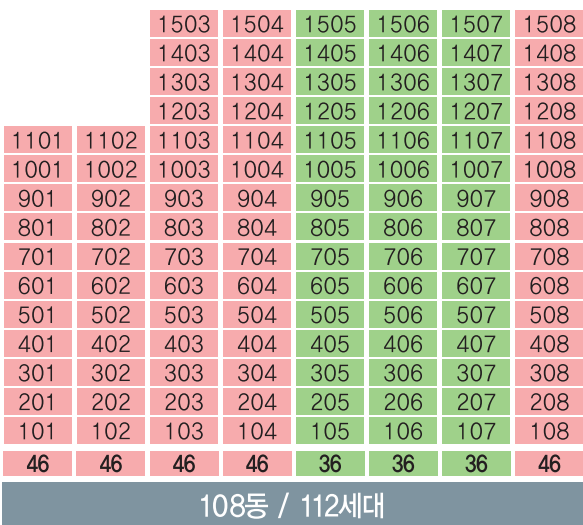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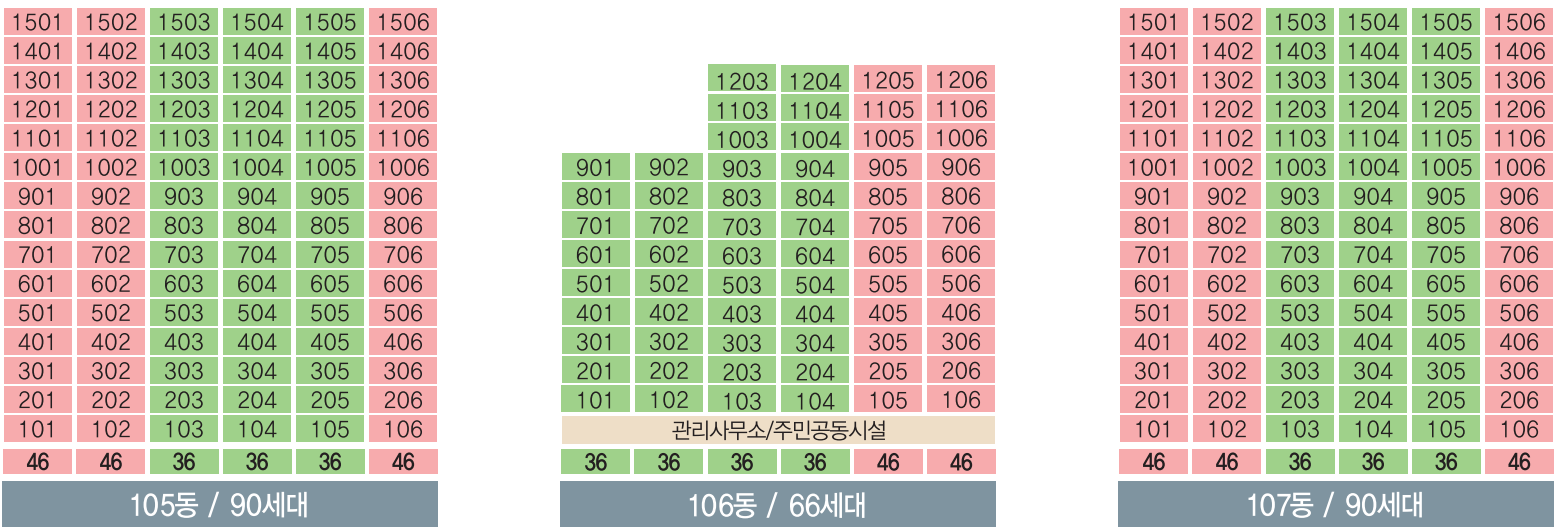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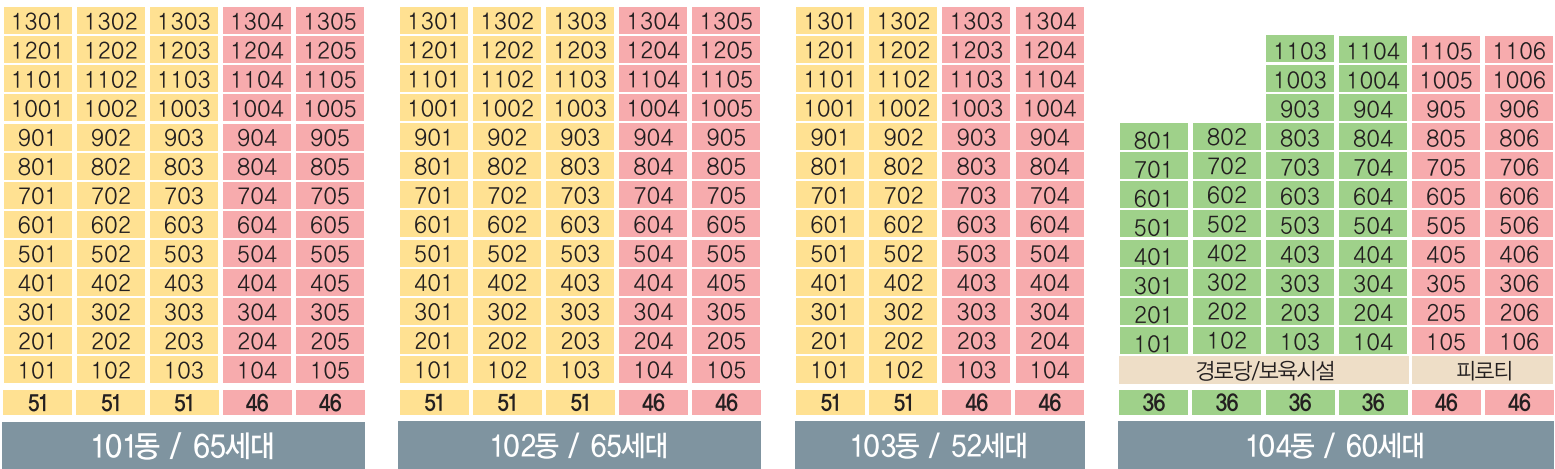
한층 더 넉넉해진 공간 설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실속과 편리함으로 채웠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²×0.3025=평)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제외)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수치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발코니 확장 전 벽체라인입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²×0.3025=평)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제외)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호평 동호배치도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 불가능한 세대 현황

103동 3호, 4호라인 / 104동 3호, 4호, 5호, 6호라인
106동 3호, 4호라인 / 107동 5호, 6호라인
108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인



남양주 호평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구분	남양주 호평	
	적용구분	마감재현황
주방가구	문짝	PB + 양면 HPM마감
	상판	인조대리석 BMC급
	주방벽	도기질 시유타일
	현관문짝	칼라강판
현 관	도어록	레버형
	바닥	자기질 시유타일
	신발장	PB + HPM마감, LPM마감
	벽체	도기질 시유타일
욕 실	바닥	자기질 시유타일
	수납장	PS전사조립장
	양변기	준원피스형
	바닥	자기질 바닥타일
발코니	외부사시	PL창호
	발코니선반	PB + PVC시트
	벽지/천정지	실크지/발포지
거실/주방	바닥	PVC마루(3.0T)
	벽지/천정지	실크지/발포지
침실	바닥	러그카펫
	거실 비디오폰	7inch 칼라 LCD
정보통신 설비	주방 라디오폰	설치유
	공용부 정보통신등급	초고속 정보 통신 1등급
	감시카메라	단지출입구, 동현관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

■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기,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시공여건상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호평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2012. 6. 15 공고)

- ※ 인터넷 신청 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 신청일정에 따라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유형별(우선 또는 일반) 및 신청순위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 **현장방문 신청 시 3~4시간 이상** 소요시간 예상되며, 기관추천 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호평 국민임대주택은 남양주별내 A1-4블록과 동시 시행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당첨취소됩니다.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myhome.lh.or.kr)으로 신청하세요!

남양주호평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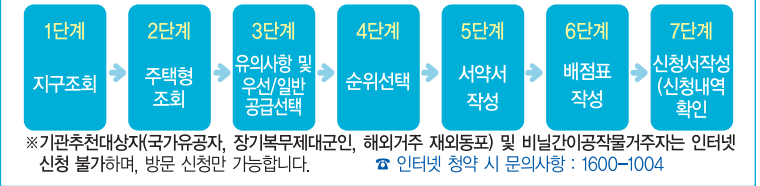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방법(**www.lh.or.kr** →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 전까지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종(금융결제원, 한국증권선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 은 인증서 사용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지정일자에만 신청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오후4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장소: LH 의정부주택전시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3-1, 호평동 1번지구 도보3로

－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비닐간이 공작물거주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여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36-6번지(600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남양주별내 A1-4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공급 형태	주택 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에 공용면적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기타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36	36	36.75	17.0572	1.9187	6.8708	62.5967	215	158	57	104동 ~108동	16,000	3,200	12,800	145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복도식	2013년 11월
46	46	46.90	21.7683	2.4488	8.7684	79.8855	281	208	73	101동 ~108동	22,000	4,400	17,600	197		
51	51	51.60	23.9497	2.6941	9.6472	87.8910	104	76	28	101동 ~103동	25,000	5,000	20,000	246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 신청은 1개월별에만 가능(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납입하여야 함)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6.15)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소득	3인 이하 가구	2,974,03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입주자로 공고일 이후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 제출하여야 함
	4인 이하 가구	3,303,550원이하	
	5인 이상 가구	3,450,450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한 세대원금액임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임부상 농업인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개·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공공규칙 제6조 제3항)으로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 시에는 포함됨		
	자동차	한대까지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본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자동차등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합승형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소득·배점항목 등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에 나타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및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에 유의하세요.

－ 인터넷 청약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10시~오후4시이며, 청약마감시 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전자장기인증)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마갈 시간에 입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신청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신청 또는 삭제가 불가하며,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속하기"로 충분히 가성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 명사)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으로 신청과 대리인의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서 없이 그 관계인증서류 제출로 갈음하여 신청가능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4 공급일정 및 장소 (남양주별내 A1-4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 남양주호평(주)자구는 사업지구철거민 우선공급대상자 없음/ 기관추천대상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형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순위	신청접수 일정		신청방법
			일자	시간	
전용면적 50㎡미만 (36·46형)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단,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우선공급 1(규칙 제32조 5항)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 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2012. 6.25(월)		1. 인터넷 접수 ≡ 공사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우선공급 2(규칙 제32조 6항~10항) 3차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012. 6.26(화)		
		▶소득 50% 이하 2,124,300원이하 (단, 4인 가구 : 2,359,68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 2,464,610원 이하)	일반공급 1순위 2012. 6.27(수) ~2012. 6.28(목)	오전 10시	
전용면적 50㎡이상 (51형)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단,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우선공급 1(규칙 제32조 5항)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 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2012. 6.25(월)		2. 방문 접수 ≡ LH의정부주택전시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3-1)
		우선공급 2(규칙 제32조 6항~10항) 3차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 공작물거주자	2012. 6.26(화)		
		▶소득 50% 이하 2,124,300원 이하	일반공급 1,2,3순위 2012. 7. 2(월)	오후 4시	

※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의 경우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접수불가**하오니 **신청 전 서류준비** 부탁드립니다으며, **서류미비로 현장접수 불가**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방문신청수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점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40%))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반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 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순 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지역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기준	비 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전용면적50㎡이상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 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 50㎡미만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2,124,300 2,974,030 4인 2,359,680 3,303,550 5인이상 2,464,610 3,450,450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 서울 노원구 및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3. 동순위에 경쟁발생 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신청순서: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전용 50㎡이상	1.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2. 동순위에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남양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신청순서: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남양주시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50세이상 (1962년6월15일이전출생)	만40세이상 (1972년6월15일이전출생)	만30세이상 (1982년6월15일이전출생)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기간 (종교일 이면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계산)	5년이상 (2007년6월15일이전 부터 거주)	3년이상 5년미만 (2007년6월16일 ~ 2009년6월15일 거주)	1년이상 3년미만 (2009년6월16일 ~ 2011년6월15일 거주)
④ 미성년자녀수(1992년 6월1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1947년 6월15일이전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년 6월15일이전부터) 부양자: 3점 단,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고용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배우기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1점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⑥, ⑧,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가소신공증의 가소지체류지외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6 우선공급 배정호수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태		우선공급															일반 공급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형	제5형					제6형	제7형	제8형	제9형	제10형						
계	사업 지구 철거민	만 65 세 이 상 노 부 모 가 장	장 기 복 무 제 대 군 인	중 소 기 업 근 로 자	북 한 이 탈 주 민	비 정 규 직 근 로 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 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3차녀이 상 가구	국가 유공자등	영구임대 거주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신청 일	없음	'12.6.25(월)										'12.6.26(화)				4번 참고		
36월	158	0	6	4	11	2	2	4	6		4		21	21	6	4	65	57
46월	208	0	9	5	14	2	3	2	6	8	5		29	28	8	5	84	73
51월	76	0	3	2	5	1	1	1	1	2	3		10	10	3	2	31	28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공급형태별로 5번 항목의 우선공급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하지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거나, 향후 인터넷 신청의 서류미제출 및 부당행위 등으로 잔여분량이 발생될 경우에도 잔여분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신청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본 임대시행지구는 철거민 우선공급 대상자가 없음
사업주체, 자치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해당순위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수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47년 6월15일이전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2011년 6월15일이전부터)부양하고 있는 자※반드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나 교부된 재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장애등급이 높은 자 → 배점 높은 자 → 추첨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자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자)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65세 이상(1947년 6월15일이전출생)자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동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20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